

○ ○ 경 찰 서

수 신 수신자 참조

제 목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 통지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을 통지합니다.

성매매 피해아동 · 청소년	성 명			생년월일	
	주 소				
	전화번호			전자우편주소 등 기타 연락처	
	재학 여부	☐ 초등학교 ☐ 중학교 ☐ 고등학교 ☐ 학교 밖 청소년 ☐ 기타()			

보호자 (친권자)	성 명			전화번호	
	관 계			실질적 보호 여부	☐ 보호 중 ☐ 미보호

실질적 보호자 ※ 필요시	성 명			전화번호	
	관 계				
※ 성매매 피해아동·청소년의 보호자(친권자)가 없는 경우 사실상 그 피해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					

사건 내용	피해 사실				
	발견 경위				
	사건 담당자	성명		소속	
		전화번호		계급	

지원 내용	경찰 지원사항	※ 국선번호인 선임요청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 지원한 사항			
	지원				
	필요사항	※ 치료·상담 및 생활비 등 추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			

○ ○ 경찰서장

직인

수신자 성평등가족부장관,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